



# 플랜트산업관련 산업표준 분류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허기무 / 기획이사, 이재현 / 학회장  
kimoo@paran.com, jhlee@hanyang.ac.kr

하나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산업의 정의, 영역, 그리고 범위 등이 개념화되어 업역 설정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업역이 확정되어야만 해당산업에 대한 실적과약이나 관리가 가능하며 효과적인 기술육성 방안제시 및 지원체도의 실효성 검증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세부적인 측면에서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한 기초 통계자료의 축적과 산업진흥을 위한 실천근거를 수립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법령에 나타난 플랜트 관련산업의 여러 가지 정의를 살펴보고 이의 정비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어서 플랜트산업-정확한 정의로는 “플랜트EPC산업”(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of plant; 플랜트 엔지니어링/자재구매/건설시공 산업)-이 산업표준분류제도에서 대우받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건축, 토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왔던 플랜트산업이 최근 유가상승과 해외플랜트 수주 증가로 인하여 자생적으로 독립된 업역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례를 제시해 본다. 참고로 본고에서는 플랜트의 법적 용어인 산업설비를 플랜트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 1. 플랜트산업의 법령적 규정

특정산업의 산업표준분류체계 현황이라는 제도

분석의 기초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도보다 상위 개념인 법적 정의의 현황부터 추적해보는 것이 법과 제도의 상호연관체계 분석에 효율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플랜트가 우리나라 법에 정의되어 있는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플랜트는 엔지니어링, 기자재 조달, 건설공사 등의 역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여러 법 규정에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 법령별로 구분하여 플랜트를 정의하고 있는 실태와 특징을 조사하면 아래와 같다.

###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교통부 소관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시행령에서 산업설비공사업을 토목, 건축공사업 등과 함께 일반건설업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즉, 산업설비를 건설공사업의 측면에서 관할하고 있다. 2003년에는 기존의 산업설비공사업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여 이에 대한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를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산업·환경설비에 산업생산시설, 환경시설, 발전소설비의 세 가지 설비를 예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건설업 면허 수준의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산업설비 시장에서 환경플랜트의 비



중이 확대함에 따라 산업설비 명칭에 환경설비를 특화하여 표시하고 있다. 특히 토목과 산업설비의 중간부분에 위치해 왔던 수처리설비를 산업·환경설비에 포함할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2005년 6월 현재 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된 일반건설업 면허등록 건수는 8,084개이며, 이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등록된 면허 수는 일반건설업 면허 중 등록 건수가 가장 적은 247(서울 55, 지방 192)개로서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산업설비 분야가 고도의 기술보유와 업체의 대형화를 필요로 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이며, 면허가 필요한 국내보다는 해외지향적 산업임을 의미한다.

## 2) 해외건설촉진법

건설교통부 소관법 중 해외건설촉진법은 다음에 설명할 산업자원부 소관의 대외무역법과 비교할 만한 법으로서, 시행령에 산업설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르면 해외건설업자는 영업에 관련된 각종 사항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산업설비공사도 표 2와 같이 해외건설촉진법의 대상이 된다.

해외건설촉진법의 산업설비공사업 관련 규정에서 주목할 점은, 전기 및 정보통신설비 일부 외에는 사실상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산업설비공사 대다수와 이 공사에 부수하는 엔지니어링 활동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해외에

서 산업설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와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에서 설명할 대외무역법에서도 산업설비 수출신고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엔지니어링 업무의 경우 엔지니어링진흥촉진법과의 영역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해외건설촉진법은 산업설비의 해외건설 및 엔지니어링과 관련되어서는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률보다 각종 신고 및 승인 등에서 주관적인 법 제도로 적용되고 있다.

## 3) 대외무역법

산업자원부 소관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법제22조, 시행령 제5절(46조부터 51조), 그리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에 산업설비수출이라는 항목으로 산업설비를 표 3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에 명시된 산업설비의 특징은 그 포함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과 주로 기자재설비의 수출에 중점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용역 또는 건설시공이 결합된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산업설비 수출신고는 노동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았을 때, 대외무역법은 기자재 단품 수출 외에는 산업설비 수출승인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즉, 대외무역법의 산업설비 규정은 포함대상의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관리 측면에서는 일

<표 1> 건설산업기본법의 산업설비 관련 규정

출처	구분	내용
시행령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 설비 등 환경 시설공사, 발전소설비 등

<표 2> 해외건설촉진법의 산업설비 관련 규정

출처	내용
시행령	[별표 1]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
	1. 산업설비중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설치공사, 철강구조물설치공사 기타 강제설비시설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반건설업 면허 관리 수준의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규정이 부재하고, 산업설비 수출에 관해서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보다 그 영향력이 미미한 실정이다.

#### 4) 법령정비의 필요성

플랜트산업은 다종다양한 분야와 기술이 종합되어 있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전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법령에 산업의 정의 및 범위 등이 혼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이를 명시한 개별 법령의 내용 또한 매우 모호하고 미비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향후 아래와 같은 장단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선 단기적인 조치로서, 정부 부처별 업무적 관심에 따라 플랜트산업의 각부분에 대해 개별적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복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플랜트산업전반에 대한 진흥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개별 법령 간의 충돌방지와 부

차별 업역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플랜트산업의 진흥기반을 확대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와 병행하여 다수의 유관부처 간의 업무 분할과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플랜트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가장 의욕적인 부처에서 플랜트산업에 대한 독립적인(정부고시 등)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법령의 정비와 정부고시의 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단기적인 조치라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플랜트산업은 설계, 기자재구매, 건설시공 즉 EPC가 하나로 합쳐진 복합산업이므로 이를 엔지니어링이나 건설 또는 기자재 분야와 같은 일부 분야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원천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조치로서는 플랜트산업의 효율적 육성과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플랜트산업촉진법(기본법) 등과 같은 독립적인 법령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 부처 창구 단일화라는 그동안 플랜트산업계에서 오랫동안 바래왔던 염원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반도체산업의 변창으로 인해 정보통신부라는 독립된 부처가 신설된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 정도를 차지하는 100억불 단위의 플랜트수출산업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육성할만한 독립적인 법령의 신설과 이를 일관적으로 추진할 정부 부처의 단일화 요구는, 절차적 어려움이라는 변명으로 넘기기에는 절대 무리한 요구사항이 아니다. 이는 플랜트산업이라는 하나의 울타리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 놓고 산업의 육성해야 한다는 최근의 '울타리 이론'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대외무역법의 산업설비 관련 규정

법	1.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산업설비의 수출 2.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이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이라 한다)
시행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철강재구조설비 2. 수상구조설비 3. 공해방지설비 4. 응수처리설비 및 해수담수화설비 5. 냉동 및 냉장설비 6. 공기조화설비 7. 저장탱크 및 저장기설비 8. 송유설비 9. 정치식운반하역설비 10. 정치식건설용설비 11. 시험연구설비
관리규정	"일정규모이상의 산업설비"라 함은 본선 인도가격으로 미화 50만달러 상당액 이상인 산업설비를 말한다.

## 2. 플랜트 엔지니어링 산업표준분류체계

엔지니어링업무, 기자재구매업무 및 건설시공업무가 포함된 복합산업분야인 플랜트산업 또는 산업설비산업은 토목산업 혹은 건축산업과는 달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소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엔지니어링과 건설업 업역에서 산업표준분류 현황을 찾아 보기로 한다.

### 1) 엔지니어링산업 측면의 산업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엔지니어링업을 [사업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하부에서 표 4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축 및 조경설계서비스업'을 별도로 독립(7431번)시켰다. 이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432번)이 존재하지만 이의 하부 분류에는 토목, 환경

및 건물관련 엔지니어링이 나열되어있다. 그러므로 플랜트산업 또는 플랜트 엔지니어링이 해당될 수 있는 곳은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74323번) 정도이나 기존 예시된 항목을 보면 여기서 언급하는 기술융합적인 플랜트산업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현재의 이러한 분류체계는 플랜트산업의 현실적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바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산업분류체계에 '플랜트엔지니어링업'을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같이 4자리 분류체계로 신설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5자리 분

<표 4> 한국산업분류체계 중 엔지니어링업 관련 분류

74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31 건축 및 조경설계서비스업
74311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743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b>743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b>
기계, 기기, 건물 및 구축물, 공정, 시스템 및 재료 등의 설계, 개발 및 이용에 관련하여 물리 및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조언제공, 타당성평가, 예비 또는 최종 계획 및 설계, 건설 및 설치에 관련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의 검사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743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시스템, 통신 및 전력선, 육외운동장 및 휴양시설, 산업시스템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에 대한 엔지니어링서비스도 포함된다.
<예 시>
• 토목 공학설계   • 토목공사 사업관리   •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 건물 엔지니어링
<제 외>
• 건물 건축관련 서비스(74311)   • 조경 설계 서비스(74312)
74322 환경상담 및 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엔지니어, 과학자 및 환경법 전문가 등의 다양한 전문가를 고용한다.
<예 시>
• 환경 및 위생 엔지니어링   • 위생상담   • 환경영향평가   • 환경부지평가
74323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기계설계   • 전기엔지니어링   • 전자엔지니어링   • 지질엔지니어링   • 해양엔지니어링   • 교통공학



류로서 7432번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하부에 '플랜트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 내용에는 발전시설, 석유 및 가스 생산 및 처리/저장시설, 석유화학시설, 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담수시설, 기타 에너지관련시설, 산업플랜트 등을 예시로 하여 업역을 설정해야 한다.

한편 현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분류하

고 있는 전문분야는 표 5와 같으며,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분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산업기계, 폐기물처리, 화학공장설계, 화학장치설비, 원자력 발전 등을 산업설비 엔지니어링으로 추정하여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건설산업 측면의 산업분류체계

엔지니어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설업에

<표 5>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전문분야 분류 및 신고업체 수

번호	일련번호	전문분야명	업체수	번호	일련번호	전문분야명	업체수
1	10040	도로및공항	579	35	14080	소방설비	10
2	10020	토목구조	425	36	15040	원자력발전	10
3	10080	상하수도	357	37	2010	선박설계	9
4	10010	토질및기초	355	38	6040	전자계산조직	9
5	10060	수자원개발	314	39	5040	철도신호	8
6	10110	도시계획	298	40	1010	기계제작	7
7	10090	농어업토목	212	41	14090	가스	6
8	10120	조경	197	42	1050	건설기계	5
9	6020	정보통신	178	43	1080	용접	5
10	11020	수질관리	154	44	5060	전자응용	5
11	10070	교통	137	45	10150	토목품질시험	5
12	15020	응용지질	88	46	1070	기계공정설계	4
13	10240	지질및지반	78	47	2020	선박건조	4
14	5010	발송배전	77	48	5080	전기철도	4
15	10030	항만및해안	76	49	10170	건설안전	4
16	10130	건축기계설비	73	50	12050	산림	4
17	1030	산업기계	67	51	14020	품질관리	4
18	11040	폐기물처리	55	52	1060	차량	3
19	10100	건축구조	52	53	5070	전자계산기	3
20	10140	건축전기설비	52	54	14010	공장관리	3
21	11010	대기관리	48	55	15050	핵연료	3
22	10050	철도	41	56	15060	방사선관리	3
23	15070	비파괴검사	41	57	9010	지하자원개발	2
24	6030	정보관리	40	58	13020	수산양식	2
25	1040	공조냉동기계	37	59	1100	정밀측정	1
26	11030	소음진동	31	60	1110	철도차량	1
27	5030	전기응용	20	61	4030	금속재료	1
28	5050	공업계측제어	19	62	7010	공업화학	1
29	15010	지구물리	16	63	7020	고분자제품	1
30	7040	화학공장설계	14	64	10180	화약류관리	1
31	1020	유체기계	13	65	12020	농화학	1
32	10190	측량및지형공	12	66	14040	산업위생관리	1
33	7030	화학장치설비	11	67	14060	전기안전	1
34	13010	해양	11				

(출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3년)



서는 1장에서 전술하였듯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종합건설업 면허 중 산업·환경설비공사를 두어 플랜트산업을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분류체계에는 표 6과 같이 플랜트공사(산업설비공사)를 토목건설업 하부에 규정함으로써 왜곡된 분류체계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외건설수주액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에서는 산업설비(플랜트)항목으로 분류 조사하여 통계발표하고 있지만, 건설교통부의 국내 건설경제통계에는 집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설수주액을 토목건설과 건축건설 두 가지로만 분류하여 자료를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국내외 플랜트 프로젝트는 EPC 턴키로 수행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며, 수행주체도 E&C(Engineering and Construction) 겸업회사의 플랜트사업본부이다. 종합건설사 조직에서 플랜트사업본부가 토목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주택사업본부 등과 대등한 위치를 지니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설업의 산업분류체계에서도 플랜트를 토목, 건축과 같은 독립적 등급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예 : 플랜트 EPC업 또는 산업설비 건설업)

<표 6> 한국산업분류체계 중 건설업 관련 분류

45 종합건설업
451 토목 건설업
4511 지반조성 공사업
4522 토목시설물 건설업
45121 도로 건설업
451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4512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451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b>45125 산업플랜트공사업</b>
45126 조경 공사업
45127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452 건물 건설업
4521 주거용 건물 건설업
452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3) 최근의 플랜트 분류 사례

업역 설정이 공식화되어야만 플랜트산업에 관련된 기술개발계획 수립, 공사 및 용역발주, 고등교육기관 교육 과정 현실화 그리고 각종 통계지표 산출 등의 후속작업이 효과적으로 입안되어 플랜트산업 육성의 추진 및 사후관리 근거가 확립될 수 있다.

최근 산업설비 분야의 업역 확정을 위한 시도가 여러 기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2005년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공고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전문분야분류표에는 산업설비분야가 표 7과 같이 대분류로 분류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산업분류체계의 건설업분야에 산업설비분야를 조정할 때 이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최근 들어 기술분류표에 플랜트 엔지니어링을 표 8과 같이 별도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이 기계설비분야의 하부로 축소 분류되는 오류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동안 독립적인 분류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플랜트 엔지니어링이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향후 플랜트 엔지니어링을 지금과 같은 하부개념이 아닌 보다 상위 등급의 영역으로 플랜트 엔지니어링을 분류

<표 7>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전문분야분류 중 산업설비 부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H. 산업설비	H01. 발전/에너지설비	H0101. 발전설비
		H0102. 에너지설비
		H0103. 기타
	H02. 환경설비	H0201. 수처리설비
		H0202. 폐기물처리설비
		H0203. 기타
	H03. 신산업설비	H0301. 신산업플랜트 (바이오산업, 해저시설 등)
		H0302. 복합플랜트
		H0303. 기타
	H04. 기타	H0401. 기타



<표 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분류표 중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문

200 기계설비분야
210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211 전산이용 최적설계 기술
<b>212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b>
213 강도설계/피로파괴
214 유체 해석 기술
215 열전달 해석 기술
216 동역학 해석 기술
217 소음 진동 해석 기술
219 기타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엔지니어링산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에서 이러한 개선방향이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일례로 2005년 9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가 [엔지니어링 서비스 경쟁력강화방안]을 논의하면서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 산업분류 변경의 예로 플랜트 분야를 예로 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4) 해외의 플랜트 분류

플랜트산업은 공종(프로세스)의 종합성과 업무의 광역화로 인해 하나로 집결하기에는 그 범위가 애매하고 업역설정이 불분명해질 수 있는 산업분야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플랜트산업의 국제표준분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반기술능력에서 그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실례로 미국의 PIP(Process Industry Practices)라는 단체는 플랜트 기자재의 표준사양서를 이미 465개 출판하여 업계에 보급하고 있으며, 향후 115개의 추가 표준사양서를 구축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14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여 플랜트 전체 생애주기의 업무(activity)를 수행단계별로 분류한 PISTEP(Process Industry Step)를 작성하여 ISO 10330으로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ABB, Kvaener 등이 회원사

<표 9> 엔지니어링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부

구분	내용
현재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 산업은 15개* 분야로 구분 * 기계, 선박, 항공·우주, 금속, 전기·전자, 통신·정보처리, 화학·섬유, 광업자원, 건설, 환경, 농림, 해양·수산, 산업관리, 응용이학
향후	- 산업계 실정에 맞추어 엔지니어링 산업분류 변경 (예 : 플랜트분야 신설 등) (과기부)

로 참여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USPI-NL은 플랜트산업 업무영역 전반을 표준화하여 전산화시키고 있으며 자사에서 분류한 표준분류를 ISO 13584와 10303으로 채택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 3. 결론

플랜트산업의 조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선형작업으로서 국가법령에서 이산업을 범부처적으로 하나의 울타리로 묶어 총괄할 수 있는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법적장치 마련과 표준분류작업이 기반이 되어야만 플랜트 관련 기술기준, 시방서, 매뉴얼, R&D 지원체계,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구축, 산업통계 등의 후속작업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플랜트산업의 산업표준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해야 함은 물론, 그와 더불어 국내 산업표준분류체계에서도 플랜트산업의 업역에 관련된 업무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겠다.

고유가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우리기업의 중동지역 해외플랜트 수주가 최대 호황인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작업을 착수할 수 있는 적기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플랜트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KIEPC)